



Advanced Accounting

K-IFRS 고급회계

Chapter 2. 연결재무제표의 기본원리



학습목표

-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와 유용성에 대해 이해한다.
- 2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해한다.
-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원칙을 이해한다.
- 4 연결회계이론을 이해한다.

1.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 **합병**(merger)은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사업결합이며, 합병 후에 피취득자의 법적 실체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하나의 법적 실체를 구성하게 되며, **법적 실체가 경제적 실체와 동일**
- **지분취득**(acquisition)은 취득자가 피취득자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형태의 사업결합이다. 따라서 지분취득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들을 하나의 경제적 단일 실체로 보고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해야 한다.

그림 2-1 사업결합 후 결합실체



1.2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

(1)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파악

법적 실체가 다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들을 하나의 경제적 단일 실체로 보고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시

개별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제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로 인한 개별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되므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감소

지배기업 경영자의 경영관리에 도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므로 지배기업의 경영자가 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실체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및 평가를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

1.2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

(2) 연결재무제표의 한계점

개별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한계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도 이용하지만 개별회사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연결재무제표의 통합된 수치만으로 개별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

업종과 회계정책의 차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들 간에 업종이나 회계정책이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업종과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통합해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저하

2.1 지배력의 의의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배력**(control)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지배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power)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ability)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2.1 지배력의 의의

▶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
- ②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 ③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힘과 변동이익의 연관)

-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위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2.1 지배력의 의의

▶ 투자자의 투자지분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 투자지분의 분류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투자자가 관련 활동, 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 종종 투자자들은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의결권을 이용하여 지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
- ② 의결권을 과반수 보유하나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 ③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1)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

▶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힘을 가진다.

- ①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거나,
-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선임한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의결권을 과반수 보유하나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 ▶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 예를 들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3)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힘을 가지는 경우이다.

- ①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 ②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③ 투자자의 의결권
- ④ 잠재적 의결권
- ⑤ ①~④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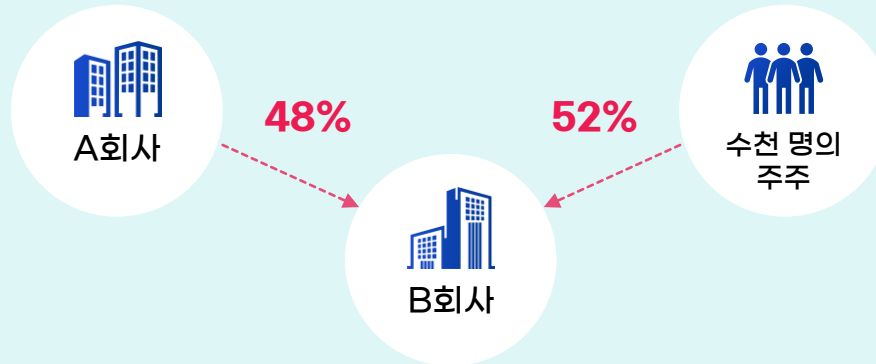
-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투자자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그리고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양상**을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가 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3)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사례 1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 시 힘을 갖는지 여부(제1110호 B43~B45)

〈경우 1〉



A회사는 B회사의 의결권 48%를 취득하였다. 나머지 의결권은 수천 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들은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

[판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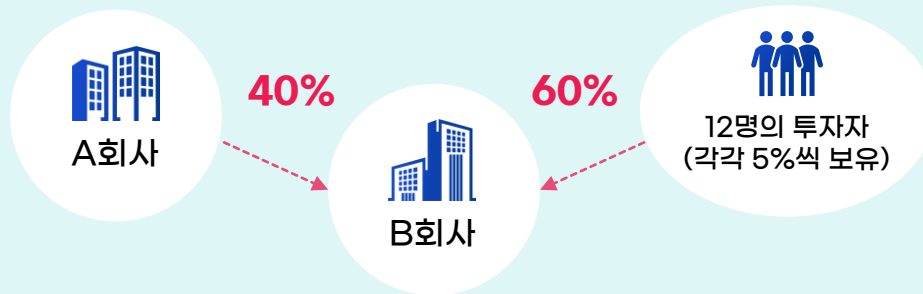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A회사가 취득한 의결권의 비율을 평가할 때, A회사의 48% 지분이 B회사를 지배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3)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사례 1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 시 힘을 갖는지 여부(제1110호 B43~B45)

〈경우 2〉



A회사는 B회사의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자 12명이 각각 5%씩 B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사이의 합의에서 A회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해임하며 경영진의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합의를 변경하려면 주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수 표결이 필요하다.

[판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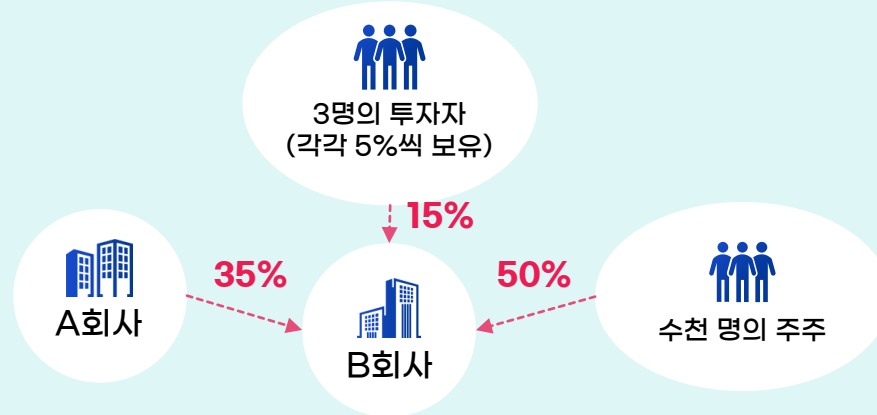
A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만으로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A회사는 **경영진의 선임·해임과 경영진의 보상을 결정할 계약상 권리가 B회사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3)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사례 1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 시 힘을 갖는지 여부(제1110호 B43~B45)

〈경우 3〉



A회사는 B회사의 의결권 3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주 3명은 B회사의 의결권을 각각 5%씩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의결권은 수많은 그 밖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들은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지 않았다. B회사의 관련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관련 주주총회에서 B회사의 의결권 75%가 투표하였다.

[판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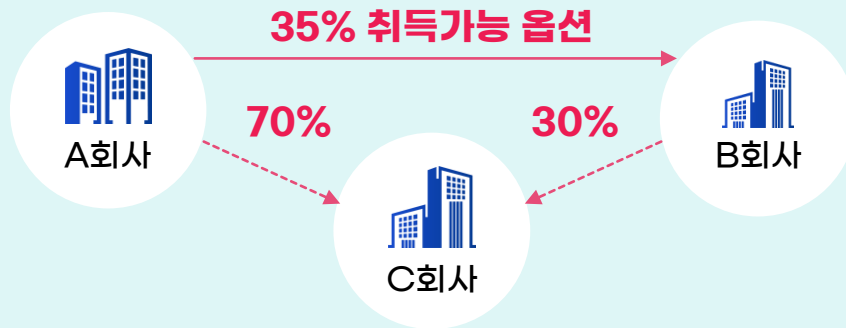
충분한 수의 다른 주주들이 A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A회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경우 최근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들의 능동적인 참여**(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양상)는 **A회사가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3)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사례 2 잠재적 의결권(제1110호 B50)

〈경우 1〉



A회사는 C회사의 의결권 70%를 보유하고 있다. B회사는 C회사의 의결권 30%와 A회사가 갖고 있는 의결권 절반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옵션은 2년 동안 깊은 외가격(out of the money) 상태인 고정 가격으로 행사될 수 있고, 향후 2년 동안 깊은 외가격(out of the money)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회사는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C회사의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판단 근거]

이 경우 A회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힘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B회사가 추가 의결권을 매입할 수 있는 현재 행사 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더라도(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C회사의 의결권 과반수가 B회사에 제공), 그러한 **옵션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실질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2.2 피투자자에 대한 힘

(3)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사례 2 잠재적 의결권(제1110호 B50)

〈경우 2〉



A회사와 다른 투자자 2명이 D회사의 의결권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 D회사의 사업 활동은 A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분상품 외에도 A회사는 언제든지 고정 가격(현재 외가격(out of the money) 상태이나 깊은 외가격(out of the money) 상태는 아님)으로 D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A회사는 D회사의 의결권 60%를 보유하게 되며 A회사는 시너지의 실현으로 효익을 얻는다.

[판단 근거]

A회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자신에게 갖게 하는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과 더불어 D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D회사에 대한 힘을 갖는다.

2.3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 이익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① 배당금, 피투자자로부터 분배된 경제적 효익
- ② 피투자자의 자산이나 부채의 관리용역에 대한 보상
- ③ 다른 지분보유자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이익(예: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자산을 결합하여 투자자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

2.4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

-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예: 펀드운용사)
- ▶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①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 ②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 ③ 보상 약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
 - ④ 피투자자에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

2.4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

사례 3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제1110호 B72)

〈경우 1〉

의사결정자(펀드운용사)는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투자 위임장에 기술된 제한적으로 정해진 한도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규제를 받는 펀드를 설립, 판매, 관리한다. 펀드는 여러 상장기업 지분증권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정해진 한도에서 펀드운용사는 투자할 자산에 재량권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펀드의 10%에 비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자신의 용역 보수로 펀드 순자산 가치의 1%에 해당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한다. 펀드운용사는 **자신이 투자한 10%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펀드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지도 않았다.

투자자들은 펀드운용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펀드가 설정한 특정 한도에서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2.4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

사례 3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제1110호 B72)

[판단 근거]

비록 펀드운용사는 위임장에서 정한 한도와 규제 요건에 따라 펀드를 운용할지라도,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운용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펀드운용사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으며 펀드에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보상과 투자로 펀드운용사가 펀드활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에 노출되지만, 이것이 펀드운용사가 본인으로 판단할 정도로 유의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제한된 한도에서 펀드운용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펀드의 이익 변동에 펀드운용사가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펀드운용사가 대리인이며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4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

사례 3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제1110호 B72)

〈경우 2〉

피투자자는 고정금리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되며 고정금리 자산유동화증권의 포트폴리오를 매수한다. 지분상품은 우선 채무투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피투자자의 잔여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신용위험 및 포트폴리오의 관리와 관련된 이자율 위험의 노출을 수반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잠재적 채무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설립 시점의 지분상품은 매수한 자산 가치의 10%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자(펀드운용사)는 피투자자의 투자안내서에 기술된 한도 내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활성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이러한 용역에서 펀드운용사는 시장 기준 고정금(즉, 관리 자산의 1%)을 수수료로 받으며, **피투자자의 이익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면 성과급**(즉, 이익의 10%)을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한다. **펀드운용사는 피투자자의 지분 35%를 보유**한다. 나머지 지분 65%와 모든 채무상품은 널리 분산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많은 수의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 펀드운용사는 다른 투자자들의 단순 다수결로 이유와 관계없이 해임될 수 있다.

2.4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

사례 3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구분(제1110호 B72)

[판단 근거]

펀드운용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수수료**로 받는다. 보상은 펀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펀드운용사의 이해관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펀드운용사는 지분의 35%를 보유하기 때문에 **펀드의 활동과 보상의 이익 변동에 노출**된다. 피투자자의 투자안내서에 기술된 한도 내에서 펀드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지만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해임권은 널리 분산된 다수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므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펀드운용사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학습정리 ••

- » 지분취득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들을 하나의 경제적 단일 실체로 보고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해야 한다.
- »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파악할 수 있고, 개별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제거하며, 지배기업 경영자의 경영관리에 도움을 준다.
- » **연결재무제표의 한계점**은 개별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들 간에 업종이나 회계정책이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업종과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통합해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저하된다.

•• 학습정리 ••

»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배력**(control)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지배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power)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ability)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투자자가 관련 활동, 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습정리 ••

»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4(1)).

- ①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②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③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④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3.1 중간 지배기업



중간 지배기업 intermediate parent

상위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림 2-3 중간 지배기업



- 최상위 지배기업인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 지배기업인 B회사 역시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문단 4(1)의 ①, ②, ③ 및 ④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3.2 투자(전문)기업



투자기업 예: 부동산투자회사, 일명 리츠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 ①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 ②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③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 투자기업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사업 목적이므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이는 문단 4(1)의 ④ 중에서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1 보고기간 종료일의 일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동일**해야 한다.

- ▶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의 추가 재무제표를 작성**
- ▶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2 회계정책의 일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 따라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해당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5.1 별도재무제표의 의의



별도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투자지분을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 ▶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거나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할 수 있다.

5.1

별도재무제표의 의의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재무제표의 종류

구분	재무제표의 종류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주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유일한 재무제표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	지분법 적용 재무제표(주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단,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유일한 재무제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	개별재무제표
투자기업	별도재무제표 단,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FVPL금융자산에 반영

5.2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① 원가법
- ②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공정가치법
- ③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 위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산의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종속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6.1 실체이론



실체이론 entity theory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 단일 실체의 관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 따라서 지배기업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비지배주주를 모두 주주로 간주하여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표시**
- ▶ 또한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분뿐만 아니라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모두를 연결당기순이익으로 표시**
- ▶ 국제회계기준은 실체이론에 근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 지배기업이론



지배기업이론 parent company theory

주주 중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입장을 강조한다. 즉,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소유주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는 것이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강조한다.**

- ▶ 따라서 지배기업의 소유주만이 주주로서 자본으로 표시되고 **비지배주주는 주주가 아니므로 비지배지분은 부채로 분류**
- ▶ 또한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분만이 연결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고 비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지배기업 입장에서 부채에 귀속될 비용이므로 연결당기순이익 계산 과정에서 차감**

➤ 실체이론과 지배기업이론을 비교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실체이론과 지배기업이론 비교

구분	실체이론(국제회계기준)	지배기업이론
연결재무제표의 성격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경제적 단일 실체의 재무제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재무제표
비지배지분	자본	부채
부(-)의 비지배지분	인식	인식하지 않음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연결당기순이익에 포함	연결당기순이익에서 차감
종속기업의 순자산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	지배기업지분만 공정가치로 평가
영업권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 모두 인정	지배기업지분만 인정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상향거래시)	전액제거	지배기업지분만 제거

7.1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당기: 20x2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1년 12월 31일 현재				
A회사	(단위: 원)			
과 목	20 X 2년		20 X 1년	
[유동자산]	x x x		x x x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x x x		x x x	
메 출 고 채 자 산	x x x		x x x	
재 기 타 유 동 자 산	x x x		x x x	
[비유동자산]	x x x		x x x	
유 영 형 자 산	x x x		x x x	
기 타 무 영 자 산	x x x		x x x	
기 타 비 유 동 자 산	x x x		x x x	
...	x x x		x x x	
자산총계	x x x		x x x	
[유동부채]	x x x		x x x	
매 입 채 무	x x x		x x x	
단 기 차 입 금	x x x		x x x	
유 동 장 기 차 금	x x x		x x x	
단 기 성 법 인 세 부 채	x x x		x x x	
기 타 유 동 부 채	x x x		x x x	
[비유동부채]	x x x		x x x	
장 기 차 입 금	x x x		x x x	
이 연 법 인 세	x x x		x x x	
장 기 총 당 부 채	x x x		x x x	
...	x x x		x x x	
부채총계	x x x		x x x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x x x		x x x	
납 입 자	x x x		x x x	
이 익 잉 여	x x x		x x x	
기 타 자 본 구 성 요 소	x x x		x x x	
비 지 배 지 분	x x x		x x x	
자본총계	x x x		x x x	
부채 및 자본 총계	x x x		x x x	

7.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 20x2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A회사					(단위: 원)	
과 목					20 X 2년	20 X 1년
매출	총	원	이	출	x x x	x x x
매출	출	이	리	가	(x x x)	(x x x)
판	매	와	관	의	x x x	x x x
영	비	외	수	의	(x x x)	(x x x)
용	업	외	비	용	x x x	x x x
여	업	차	전	의	(x x x)	(x x x)
법	인	세	감	의	x x x	x x x
법	세	인	전	용	(x x x)	(x x x)
계	속	영	업	의	x x x	x x x
중	단	영	이	의	x x x	x x x
당	기	순	손	익	x x x	x x x
기	타	포	괄	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x x x	x x x
항목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x x x	x x x
항목						
총	포	괄	이	의	x x x	x x x
당	기	순	이	의		
지	배	기	업	소	x x x	x x x
비	지	배	소	지	x x x	x x x
					x x x	x x x
총	포	괄	이	의		
지	배	기	업	소	x x x	x x x
비	지	배	소	지	x x x	x x x
					x x x	x x x
주	당	이	의	익		
기	본	및	회	석	x x x	x x x

7.3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당기: 20x2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A회사	(단위: 원)					
구 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소유주 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x1. 1. 1.(전기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x x x		x x x	x x x	x x x
전기오류수정		(x x x)		(x x x)	(x x x)	(x x x)
수정후 금액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배당금 지급		(x x x)		(x x x)	(x x x)	(x x x)
유상증자	x x x			x x x	x x x	x x x
당기순이익		x x x		x x x	x x x	x x x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x x x	x x x	x x x	x x x
재평가이익			x x x	x x x	x x x	x x x
20x1.12.31.(전기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0x1. 1. 1.(당기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x x x		x x x	x x x	x x x
전기오류수정		(x x x)		(x x x)	(x x x)	(x x x)
수정후 금액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배당금 지급		(x x x)		(x x x)	(x x x)	(x x x)
유상증자	x x x			x x x	x x x	x x x
당기순이익		x x x		x x x	x x x	x x x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x x x	x x x	x x x	x x x
재평가이익			x x x	x x x	x x x	x x x
20x1.12.31.(당기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7.4

연결현금흐름표(직접법)

연결현금흐름표

당기: 20x2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A회사			(단위 : 원)
구 분	20x2년	20x1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x x x	x x x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x x x)	(x x x)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x x x	x x x	
이자지급	(x x x)	(x x x)	
법인세의 납부	(x x x)	(x x x)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x x x	x x x	
투자활동 현금흐름			
종속기업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x x x)	(x x x)	
유형자산의 취득	(x x x)	(x x x)	
설비의 처분	x x x	x x x	
이자수취	x x x	x x x	
배당금수취	x x x	x x x	
...	x x x	x x x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x x x	x x x	
재무활동 현금흐름			
유상증자	x x x	x x x	
장기차입금	x x x	x x x	
배당금 지급	(x x x)	(x x x)	
...	x x x	x x x	
재무활동 순현금흐름	x x x	x x x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x x x	x x x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x x x	x x x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x x x	x x x	

•• 학습정리 ••

- » **중간 지배기업**(intermediate parent)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같은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란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투자지분을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 학습정리 ••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인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주주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체이론**(entity theory)과 **지배기업이론**(parent company theory)으로 구분한다. 실체이론과 지배기업이론을 비교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실체이론(국제회계기준)	지배기업이론
연결재무제표의 성격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경제적 단일 실체의 재무제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재무제표
비지배지분	자본	부채
부(-)의 비지배지분	인식	인식하지 않음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연결당기순이익에 포함	연결당기순이익에서 차감
종속기업의 순자산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	지배기업지분만 공정가치로 평가
영업권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 모두 인정	지배기업지분만 인정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상향거래시)	전액제거	지배기업지분만 제거

•• 학습정리 ••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 연결자본변동표에서 자본의 변동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을 별도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제작 이미지 출처

- ➡ <http://kr.freepik.com/>
- ➡ <https://www.flaticon.com/kr/>